

외국 법인의 대만 투자 및 법인 설립 완전 가이드

(적용 대상: 외국 법인이 직접 투자하여 대만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.
이하에서는 유한회사 형태를 예시로 설명합니다.)

본 가이드는 해외에서 적법하게 설립된 외국 법인(Foreign Corporate Investor)이 대만(주로 타이베이)을 예시로 함)에 자회사를 설립할 때 필요한 실무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.

[예상 소요 기간]

약 8~12 주

(실제 소요 기간은 서류 공증·인증 절차 및 은행 KYC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)

제 0 단계: 투자 전 사전 계획 및 서류 인증

0.1 사전 검토 핵심 사항

- **회사명:** 중국어 회사명 3~5 개, 영어 회사명 1 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
영어명은 은행 계좌 개설 및 무역 관련 업무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.
- **사업장 주소:** 특히 타이베이는 건물 용도 규제가 엄격하므로, 해당 주소가 회사 등록 및 영업용으로 적법한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.
- **출자 구조:**
 - 외국 법인이 100% 출자하는 **완전자회사**로 할 것인지
 - 대만 현지 파트너와의 **합자회사**로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.
- **지정 대표자:** 외국 법인은 대만 자회사의 **이사(Director)** 로 자연인 1 명을 지정해야 합니다.
이 사람은 은행 계좌 개설을 위해 **직접 대만에 방문할 수 있어야** 합니다.
- **자본금 기준:** 향후 외국인 대표자 또는 외국인 매니저의 취업허가를 신청할 계획이 있다면, 자본금은 일반적으로 **최소 NT\$500,000 이상**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0.2 위임 및 공증·인증 절차

법인 자체는 직접 출석할 수 없으므로, 일반적으로 대만의 회계사 또는 변호사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각종 절차를 진행합니다.

- **필요 서류**
 1. **이사회 결의서 또는 주주 결의서**
대만 투자 결정, 투자 금액, 지정 대표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.
 2. **위임장(Power of Attorney, POA)**
투자허가 신청 및 각종 설립등기 절차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서류입니다.
 3. **투자자 확인 서류**
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.
 - 회사 설립증명서(Certificate of Incorporation)
 - 존속증명서(Proof of Good Standing)
 - 이사 및 주주 명부
 - 최종 수익적 소유자(UBO: Ultimate Beneficial Owner) 관련 자료
- **인증 요건**
위 서류들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소재국에서 **공증(Notarization)** 을 받은 후, 가장 가까운 주재 타이베이대표부(TECO) 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.

제 1 단계: 회사명 예약 및 사업장 사전 심사

- **회사명 예약**
대만 경제부에 중국어 회사명 예약을 신청하며, 일반적으로 6개월간 유효합니다.
- **사업장 사전 심사(특히 타이베이시)**
타이베이시는 주거용/상업용 용도 규제가 엄격하므로,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해당 주소가 사무실 또는 영업장으로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.
- **주의 사항**
설령 회사 등록이 일단 승인되더라도, 예를 들어 순수 주거지역을 위법하게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NT\$60,000~NT\$300,000 의 벌금

이 부과될 수 있으며, 추가로 사업장 이전 명령 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
제 2 단계: 투자허가 신청 및 자본금 송금

- 외국인 투자허가 신청
대만 경제부 투자심의 관련 기관에 투자계획서 및 UBO 정보 등을 제출하여 허가를 신청합니다.
- 준비계좌 개설
지정된 이사가 직접 대만의 외환 취급 지정은행 을 방문하여 회사 명의의 준비처 계좌(籌備處 계좌) 를 개설합니다.
- 자본금 송금
자본금은 반드시 외국 법인 본인의 해외 은행계좌 에서 대만의 준비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.
- 송금 코드
“310” (외국인 주식자본 투자) 를 사용해야 합니다.
- 중요 제한 사항
주주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에서의 송금 또는 대만 국내 자금에서의 송금 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
제 3 단계: 회계사의 자본금 검증 및 설립 전 서류 준비

3.1 회계사의 자본금 검증 보고서

대만 회사법상 투자심의기관이 입금 사실을 확인하였더라도, 회사 설립등기 단계에서는 별도로 대만의 독립된 회계사가 발행한 자본금 검증 보고서 가 필요합니다.

3.2 설립 서류 준비

통상 회계사 사무소가 아래 서류를 포함한 일체의 설립 서류 준비를 지원합니다.

- 정관(Articles of Incorporation)

- 주주 동의서(Shareholders' Consent)
- 이사 취임 승낙서(Director's Consent to Serve)

3.3 자금세탁방지(AML) 신고

최종 수익적 소유자(UBO) 정보는 단순 신고 대상일 뿐 아니라, 실질적인 확인 및 검증 절차가 요구됩니다.

- 주요 필요 자료
 - 은행 통장 사본
 - 예금잔액증명서

제 4 단계: 회사 설립등기

- 관할 기관
대만 경제부 상업발전 관련 기관 또는 타이베이시 상업처
- 절차 내용
회계사의 자본금 검증 보고서 및 설립 관련 법정 서류 일체를 제출합니다.
- 효과
승인 후 회사는 정식으로 법인격을 취득합니다.
- 발급 서류
 - 회사 설립등기 승인서
 - 회사 등기표
- 결과
이 단계에서 정식 8자리 통일번호(사업자번호 / Unified Business Number) 를 부여받게 됩니다.

제 5 단계: 세적 등록(영업세 등록)

- 관할 기관
국세국
- 절차 내용
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기관에 세적 등록을 신청합니다.
- 보충 설명
일부 지역에서는 명의도용 방지 차원에서 지정 이사 본인의 면담 또는 직접 서명 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.

- **결과**
세적 등록 승인서 를 발급받게 됩니다.

제 6 단계: 송장(인보이스) 사용 개시 절차

- **전자송장 및 송장구매증**
디지털 관리 측면에서 전자송장(Electronic Invoice) 사용을 권장합니다.
종이 통일송장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통일송장구매증 을 취득해야 합니다.
- **신청 절차**
이사 본인 또는 수권 대리인이 회사 인감, 대표자 인감 및 등기 서류 를 지참하여 세무기관에서 설정 절차를 완료합니다.
- **결과**
회사는 정식으로 송장을 발행하고 판매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자격 을 갖추게 됩니다.

제 7 단계: 준비계좌를 정식 회사계좌로 전환

- **처리 은행**
준비계좌를 개설한 외환 취급 지정은행
- **필요 서류**
 - 회사 설립등기 승인서
 - 회사 등기표
 - 정관
 - 정식 회사 인감
- **은행 처리 내용**
계좌 명의에서 “籌備處” 표기가 삭제되고, 정식 법인계좌로 변경됩니다.
- **결과**
 - 은행 신고 인감 갱신
 - 서명카드(signature card) 갱신
 - 이후 회사는 자본금을 정식으로 사업 운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제 8 단계: 설립 후 준법·사후 관리 사항

- **취업허가(Work Permit)**

투자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만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.

외국인 대표자가 대만에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으려면, 별도로 **노동부 취업허가** 를 신청해야 합니다.

- **거류증(ARC)**

취업허가를 취득한 후 이를 근거로 거류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- **회계·세무 준수**

대만의 세무제도는 비교적 복잡하며, 예를 들어 **2개월마다 영업세 신고** 를 해야 하는 등 지속적인 법규 준수가 필요합니다.

따라서 설립 후에는 **회계사 사무소에 기장, 세무신고 및 법규 준수** 업무를 지속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강력히 권장됩니다.